

# 감사업무 교류·협력 증진 업무협약서

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(이하 "협약기관"이라 한다)는 감사업무와 관련한 상호 교류·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자체감사 업무전반에 대해 발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감사기법 및 청렴시책 등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선진화된 감사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, 투명하고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고 지원한다.

1. 감사·감찰업무에 필요시 상호 감사인력 지원(출장·파견)
2. 감사기법·청렴 우수시책 등 관련정보 교류
3. 감사업무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

**제3조(운영원칙)** 협약기관 상호간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협의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해당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4조(비용부담)** 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안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5조(비밀유지)** 협약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**제6조(효력발생)**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이 각각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.

2020. 12. 10.

서울주택도시공사

감사 이비오

이비오

인천도시공사

감사 윤병석

윤병석